

<의안번호 제2006-11호>

[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  
[ 심사 보고서 ]

## 1. 심사경과

- 가. 빨의일자 : 2006. 3. 10
- 나. 빨의자 : 신현기 의원 외 8명
- 다. 상정일자 : 2006. 3. 17

## 2. 제안이유

-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인 노령·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이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 병원·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결손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저소득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와 결손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등으로 함(안 제3조).
-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와 결손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등으로 함(안 제5조).
-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 4.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사실상 어려운 세대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저소득 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동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가구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으로 월보험료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결손가정 및 장애인 세대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이미 동 조례안은 도내 합천군을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정된다면 군내 상대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에 예산조달 등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결과, 전액 군비로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시 확보하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